규제영향분석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2.산업재산진단기관 관련 행정처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특허청	작성자	이름	황인선
	담당부서(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국장	이인수		연락처	042-481-5084
	과장	최일승		이메일	ishwang@korea.kr

2024. 04. 1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2.규제조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9조제2항		
	3.위임법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19~2024.05.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의 규정 필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 특허청장은 _____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_____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특허기술 조사·분석 세액공제'21년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육성 및 관리 필요 *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 공제 시, 일정 품질 이상의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재산진단기관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이에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안)」에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요건 조항의 제정 필요 <정부개입 필요성> ○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고품질의 특허기술 조사·분석 제공 및 무분별한 세액공제 남용 방지		
	7.규제내용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안)」제9조제2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산업재산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table>
<tr><td rowspan="3"></td><td></td><td>2. 제4항 각 호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피규제집단) 특허사무소, 특허분석 전문기업 등

○ (이해관계자)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련 협회 및 단체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산업재산진단기관</td><td>269개</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일정품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육성하여 민간의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td></tr>
<tr><td rowspan="5">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5">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able><tr><th></th><th>비용</th><th>편익</th><th>순비용</th></tr><tr><td>피규제자</td><td>3,674.64</td><td>20,171.38</td><td>-16,496.74</td></tr><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tr><td>정성분석</td><td>38.4억 원/년</td><td>211억 원/년</td><td>-172.6억 원/년</td></tr></table></td></tr>
<tr><td>주요내용</td><td>□ 비 용

◈ 진단기관 유지를 위한 인력 및 시설 요건 만족을 위한 피규제자 추가 발생 비용의 총액은 연간 약 38.4억원 수준

① 인력 요건

○ (인력 추가 규모) ’23년 진단기관 수는 총 269개(IP 조사분석업체 52, 법인 변리사업 96, 개인변리사업 121)이고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추가 인력 고용 없이 진단기관 지정이 가능

- 소규모전문인력 1~4명 변리사업 및 IP 조사분석업체가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할 것이고, 특허사무소의 39.8% 및 IP 조사분석업체의 26.5%가 소규모 업체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비율을 반영

* 출처 : 2021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 (인건비 책정) 진단기관 지정 최소요건으로 기술분야 1인 전문인력에 대해 각 업체별로 책임연</td></tr>
</table>

			구원 또는 연구원의 추가 고용 비율을 5:5로 가정하여 2종의 인건비 평균으로 책정 ○ (비용 산출) 121개 개인변리사업체에서 기존 인력 外 추가 전문인력 1인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을 고용하여 진단기관을 유지 시 인력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총 비용은 약 38.4억 원 - 100개(217×39.8%+52×26.5%)×1인×3,200,167원×12개월=38.4억 원 ② 시설 요건 ○ (보안 시설) 일정 규모의 비밀 유지 전용 공간, 일반적으로 기존 공간시건장치 有 개별 사무실 또는 창고 등을 활용하므로 추가 부담 無 ○ (전산 장비) 특허청 제공 DB에 접속 가능한 최소 전산장비인터넷 접속 가능 컴퓨터 1대로 충족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 無 □ 편 익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매출 증가 및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금액은 연간 총 211억 원 ① 산업재산 진단기관 ○ (매출 증가) 최근 3년간('21~'23) 특허청 IP-R&D 전략지원 과제* 2,003건 중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건수는 1,680건, 84%를 차지할 정도로 진단기관의 수주율 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기관(지재권 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학·연 R&D현장에 맞춤형·밀착형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 일반적인 수주율을 50%로 가정하면 진단기관의 지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확률이 34% 상승한 것인 바, 이를 전체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등 사업에 적용하여 매출 증가액 산출

			- 681억÷134%×34%=173억 원 ② 중소기업 ○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은 금액을 산정 - (정부지원사업 中 민간 자부담금 28억+민간 124억) × 25% = 38억 원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3,674.64	16,535.02	-13,439.09

15.규제정비 계획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발명진흥법-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말한다. 1.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정보통신 각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 ③ ~ ⑤ <생 략>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산업재산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2. 제2항 각 호의 산업재산 진단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 ③ ~ ⑤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에서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산업재산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명 및 산업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

○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재산정보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규정 필요**

*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제1항 : 특허청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연구개발 현장에서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R&D **단계별 특허기술 조사·분석 업무**가 지속적으로 **제도화** 됨

■ 국가R&D 사전조사/기획연구에 대한 특허동향 조사 규정화 도입('05.6) ■ R&D 과제 선정 단계에서 선행특허 조사 규정화 도입('13.9) ■ 정부 R&D 직접비에서 특허 조사·분석 비용 편성·활용 근거규정 신설('17)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과제에 대한 IP-R&D 수행 노력 의무 규정('20.3)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21.1월)

○ 또한, 本 조항은 **기존 발명진흥법의 규정**을 **「산업재산정보법」으로 이관**한 사항으로 **現 피규제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지출 및 시설 설치 등의 **추가적인 부담 無**

<정부개입 필요성>

○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는 정부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 필요

– 전문성을 갖춘 특허분석 전문기관을 선별·지정 및 육성함으로써, **특허기술 조사·분석 품질 향상, 민간 시장 확대** 및 **우수 특허 창출** 지원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 또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의 **세액공제***('21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육성 및 품질관리 필요**

*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 공제 시, 일정 품질 이상의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u>산업재산진단기관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 인정</u>**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 바. <생 략> **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u>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u>**

☞ **전문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세액공제 남용 방지 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내용	ㅇ(인력) 전문성을 갖춘 인력 ㅇ(시설) 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장비
규제대안2	대안명	별도 기준 없이 산업재산진단 기관 지정
	내용	진단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 없이 진단기관 지정을 원하는 유사경력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ㅇ 산업재산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전산장비에 대한 최소 기준을 갖춘 민간 기관들을 확보하여, - IP-R&D 품질 향상 및 민간 시장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 ㅇ 또한, IP-R&D 세액공제를 위해 일정 수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이용을 유도하여, - 무분별한 세액공제 방지 가능	ㅇ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위해 인력, 시설, 전산장비 등 요건을 충족 필요 - 업계 현실 및 매우 낮은 수준의 시설·장비요건 규정을 고려할 때,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 행정·재정적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ㅇ (인력) IP-R&D 수행을 위한 최소 경력 요건으로, 현장에서 이미 통용되는 기준 - 특허사무소, 특허조사전문기업의 경우 해당 요건을 이미 충족하는 기업이 대다수 ㅇ (시설·장비) 진단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전산장비 요건은 필수 * 특허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안 유지 필수
규제대안2	ㅇ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들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부담이 없으	산업재산진단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가 기관 자율에 맡겨지게 되므로,

	며, 진단기관 확보 용이	- 진단기관에 대한 일관된 품질 관리가 어려워 정책목표를 달성 곤란 * IP-R&D에 대한 세액공제 시 일정 품질 이상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기재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한변리사회	'20. 6. 29.(월) 고시개정관련 간담회(서울)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 7. 02.(목) 고시개정관련 간담회(서울)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내외	'20. 8. 03.(월) ~ 8. 10.(월) 청내외 의견수렴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1의 선택근거

– 산업재산진단기관은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中**('21년~)

–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진단기관의 품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품질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지정 요건 마련이 필요**

– 本 지정기준은 **現 IP R&D 전문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수준과 차이나지 않으므로, **추가적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3. 규제목표

○ **일정 기준**의 이상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육성**하여 민간의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R&D**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며, 무분별한 세액공제 방지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육성하여 **민간의 특허기술 조사·분석 품질 수준을 제고** 및 **중소기업 등의** R&D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또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담보되도록 국가의 관리 필요**

○ (**수단**) 진단기관이 수행할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등)의 품질 담보**를 위해 최소한의 **업무 전문성 및 시설**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요건을 마련**

○ (**인력 요건의 타당성**)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등은 전문 수행 인력이 **국내·외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 등 기업의 R&D**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업무로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

– 現 산업재산진단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매년 IP-R&D과제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 시 적용하는 **전문인력 기준 또한 본 기준요건과 동일**

○ (**시설·장비 요건의 타당성**) 시설기준은 특허기술 조사·분석 **의뢰자의 산업재산 비밀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시설의 최소 기준을 미설정, **비밀 유지 가능 전용 공간**이면 요건을 충족

– 전산장비의 경우 특허청 제공 DB에 접속 가능한 **최소 전산장비**(인터넷 접속 가능 컴퓨터 1대)로 충족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 無**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本 지정요건은 **최소한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만을 규정한** 바, 중소기업에 특별히 부담을 지우는 규제는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산업재산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관리하여 **지속적인 품질 확보가 필요**하므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개별법 및 행정규칙에서 제도의 목적에 따라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을 **다수 규정**하고 있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④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2,860.3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할인율(%)	단위

		(년)		
제12조 >	2023	2024	1	4.5	백만원, 현재가치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별표 2]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지정요건
1. 사업장 규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하며,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를 모두 포함한다) 내의 농산물 직거래 수요에 적합한 매장규모를 갖출 것
2. 시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판매시설 나. 소포장시설 다. 품질관리실 라. 하역시설 마. 주차시설
3. 인력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비고 : 제1호의 사업장 규모는 농산물 직거래 수요를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적합한 매장규모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규제대안 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674.64	16,535.02	-12,860.38
	간접		3,636.36	-3,636.36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674.64	20,171.38	-16,496.74
기업순비용		-12,860.38	연간균등순비용	-13,439.09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요건**이며, 또한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의 세액공제 혜택 적용에 따라 **매출증대가 보장**되므로 규제준수 가능성은 매우 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에서**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므로, **추가적인 집행자원 없이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의 사업담당자**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집행이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시행령 제정안 작성('24.3.13, 특허청)

○ 廳 內 의견수렴 실시('24.3.14 ~ 3.20)

○ 시행령 제정안 확정('24.3.21)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제정 이후 **주기적으로 진단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 검토 및 환류** 시행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종합결론

○ 전문성을 갖춘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선별·지정 및 육성함으로써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등 **품질 향상**, **민간 시장 확대** 및 **우수 특허 창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本 지정기준은 진단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IP R&D 등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무분별한 세액공제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674.64	16,535.02	-12,860.38
	간접		3,636.36	-3,636.36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674.64	20,171.38	-16,496.74
기업순비용		-12,860.38	연간균등순비용	-13,439.0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산업재산진단기관
활동제목	인력 및 시설 요건 만족을 위한 비용
비용항목	노동
비용	3,674,641,14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월간 투입인원 1 X 월당 근로임금(원) 320만원 X 피규제자 수 100개 X 12개월(1 * 3200000 * 100 * 12)
근거설명	□ 비 용 ◈ 진단기관 유지를 위한 인력 및 시설 요건 만족을 **추가 발생 비용**의 총액은 **연간 약** 38.4**억원** 수준 ① **인력 요건** ㅇ **(인력 추가 규모)** **'23년 진단기관 수는 총** 269**개** (IP **조사분석업체** 52, **법인 변리사업** 96, **개인변리사업** 121)**이고 이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추가 인력 고용 없이 진단기관 지정이 가능**

연도	기관 수 (누적)	지정 기술분야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20	132	93	78	68	48	-
'21	235	145	132	104	75	신규
'22	248	150	138	106	72	신규
'23	269	156	151	112	73	신규

업종	변리사업(개인)	변리사업(법인)	IP 조사분석
개수	121	96	52

– **소규모**전문인력 1~4명 변리사업 및 IP 조사분석 업체가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할 것이고, **특허사무소의** 39.8% 및 IP **조사분석업체의** 26.5%가 소규모 업체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비율을 반영

* 출처 : 2021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ㅇ **(인건비 책정) 진단기관 지정 최소요건**으로 기술

분야 1인 전문인력에 대해 각 업체별로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의 추가 **고용 비율을** 5:5**로 가정**하여 2종의 **인건비 평균**으로 책정

등급	책임연구원(A)	연구원(B)	
월급여(원)	3,622,585	2,777,750	

○ **(비용 산출)** 121**개** 개인변리사업체에서 기존 인력 外 추가 **전문인력 1인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을 고용하여 진단기관을 유지 시 **인력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총 비용은 약** 38.4**억 원**

– 100개(217×39.8%+52×26.5%)×1인×3,200,167원×12개월=38.4억 원

② **시설 요건**

○ **(보안 시설) 일정 규모의 비밀 유지 전용 공간**, 일반적으로 **기존 공간**(시건장치 有 개별 사무실 또는 창고 등)을 **활용**하므로 **추가 부담 無**

○ **(전산 장비)** 특허청 제공 DB에 접속 가능한 **최소 전산장비**인터넷 접속 가능 컴퓨터 1대로 충족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 無**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산업재산진단기관
활동제목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에 따른 매출 증가
편익항목	매출 증가
편익	16,535,028,209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진단기관 실적(681억) X 매출 증가 비율(34%) X 매출 증가 포함 전체 비율(134%)(68100000000*0.34/1.34)
근거설명	① **산업재산 진단기관** ○ **(매출 증가) 최근 3년간**('21~'23) **특허청 IP-R&D 전략지원 과제*** 2,003**건 중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건수는** 1,680**건,** 84%**를 차지할 정도로 진단기관의 수주율 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기관(지재권 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학·연 R&D현장에 맞춤형·밀착형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 – **일반적인 수주율을** 50%**로 가정하면 진단기관의**

<table>
<tr><td></td><td>
지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확률이 34% 상승한 것인 바, 이를 전체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등 사업에 적용하여 매출 증가액 산출
- 681억÷134%×34%=173억 원
<table>
<tr><th>구분</th><th>수행건수</th><th>금</th></tr>
<tr><td>정부지원사업</td><td>2,241건(61%)</td><td>557억(82%) [민간</td></tr>
<tr><td>그 외(민간)</td><td>1,442건(39%)</td><td>124억(</td></tr>
<tr><td>합 계</td><td>3,683건</td><td>681</td></tr>
</table>
</td></tr>
</table>

□ 간접편익

<table>
<tr><td>(정량)영향집단명</td><td>중소기업</td></tr>
<tr><td>활동제목</td><td>특허 조사분석 사업 수행 세액공제</td></tr>
<tr><td>편익항목</td><td>세액공제</td></tr>
<tr><td>편익</td><td>3,636,363,636</td></tr>
<tr><td>일시적/반복적</td><td>반복적/연간균등</td></tr>
<tr><td>산식</td><td>(정부지원사업 중 민간 자부담금(28억)+민간사업 비용(124억))*세액공제율(25%)((2800000000+12400000000)*0.25)</td></tr>
<tr><td>근거설명</td><td>
<table>
<tr><th>구분</th><th>수행건수</th><th>금</th></tr>
<tr><td>정부지원사업</td><td>2,241건(61%)</td><td>557억(82%) [민간</td></tr>
<tr><td>그 외(민간)</td><td>1,442건(39%)</td><td>124억(</td></tr>
<tr><td>합 계</td><td>3,683건</td><td>681</td></tr>
</table>
② 중소기업
○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은 금액을 산정
- (정부지원사업 中 민간 자부담금 28억+민간 124억) × 25% = 38억 원
</td></tr>
</table>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산업재산진단기관 관련 행정처분</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제5항</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4.04.19~2024.05.29</td></tr>
<tr><td rowspan="2">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추진배경>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의 규정 필요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제5항 : ____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_____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기술 조사·분석 세액공제'21년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 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의 관리 필요

*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 공제 시, 일정 품질 이상의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재산진단기관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이에 진단기관이 전문성 및 신뢰성을 상실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

※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후 개정법률 제11960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419호(2011.7.11.)

<정부개입 필요성>

○ 정부에 의해 지정이 이루어지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 필요</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안)」제10조제1항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td><td></td><td colspan="3">별표 1과 같다.</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 (피규제집단) 특허사무소, 특허분석 전문기업 등

○ (이해관계자)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련 협회 및 단체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table>
<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r><td>피규제자</td><td>산업재산진단기관</td><td>269개</td></tr>
</table></td></tr>
<tr><td>9.규제목표</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2">10.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td><td>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td><td colspan="3">○ 일정품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민간의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td></tr>
<tr><td rowspan="3">기타</td><td rowspan="3">12.규제일몰제</td><td colspan="3">
<table>
<tr><th>대분류</th><th colspan="2">소분류</th></tr>
<tr><td rowspan="3">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 rowspan="2">일몰설정 세부기준</td><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able>
<table>
<tr><th>일몰설정여부</th><th>일몰조문</th><th>연장여부</th></tr>
<tr><td>미설정</td><td></td><td></td></tr>
<tr><th>일몰유형</th><th>일몰설정기간</th><th>일몰주기</th></tr>
<tr><td></td><td></td><td></td></tr>
</table></td></tr>
<tr><td>13. 우선허용·</td><td colspan="3">해당 없음</td></tr>
</table>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발명진흥법- 제19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0조(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8]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그 밖에 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2개	업무정지 6개	지정취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산업재산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제2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 그 밖에 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현 행	개 정 안
월 월	발생한 경우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3항제3호 경고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에서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산업재산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발명 및 산업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

○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산업재산정보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규정 필요

*** 「산업재산정보법」제17조제5항 : _____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_____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연구개발 현장에서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R&D **단계별 특허기술 조사·분석 업무**가 **지속적으로 제도화** 됨

■ 국가R&D 사전조사/기획연구에 대한 특허동향 조사 규정화 도입('05.6) ■ R&D 과제 선정 단계에서 선행특허 조사 규정화 도입('13.9) ■ 정부 R&D 직접비에서 특허 조사·분석 비용 편성·활용 근거규정 신설('17)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과제에 대한 IP-R&D 수행 노력 의무 규정('20.3)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조사ㆍ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21.1월)

○ 이에 R&D**의 품질제고** 및 **무분별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수**

<정부개입 필요성>

○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는 정부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 필요

– 정부에 의해 지정이 이루어지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 필요**

>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ㆍ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 또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의 세액공제*('21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신뢰성 및 전문성 유지** 필요

* 특허 조사·분석 비용 세액 공제 시, 일정 품질 이상의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u>산업재산진단기관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 인정</u>**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1. 연구개발
> 가. ~ 바. <생 략>
> **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u>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ㆍ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u>**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ㆍ유지**하여 **무분별한 세액공제 남용 방지 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	대안명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마련
	내용	진단기관의 거짓 지정 및 요건 상실 등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가능	○ 위반시 처분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 산업재산진단기관은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中**(‘21년~)

–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상실 시 지정취소 등의 처분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국민	‘13.10.2. 공청회	없음	해당없음
관계부처 및 기관	’13.9.13.~9.27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문의	없음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민간의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R&D**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며, 무분별한 세액공제 방지 가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산업재산진단기관에 대한 **전문성ㆍ신뢰성 확보 및 유지**를 통해 **민간의 특허기술 조사·분석 품질 수준 제고** 및 **중소기업 등의** R&D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또한, 특허기술 조사·분석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국가의 **관리 필요**

o (**수단**) 진단기관이 수행할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등의 품질 담보를 위해 **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상실 시 지정취소 등의 처분 규정** 마련

○ (**타당성**)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시 **인력, 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당 요건에 대한 **거짓이 없이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따르나,

– 이를 통해 **특허청, 산업재산진단기관,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수행 민간** 등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신뢰**하고 **결과물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익적 규제목적이 달성**됨을 감안할 때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本 처분 규정은 **최소한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만을 규정한** 지정 요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영향 無**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산업재산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계속 유지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개별법 및 행정규칙에서 제도의 목적에 따라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

제10조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에도 그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1호	지정취소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30일	지정취소
다.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3호			
1) 법 제1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60일	사업정지 120일	지정취소
2) 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사업정지 60일	사업정지 120일	지정취소
3) 법 제1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30일
4) 법 제14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30일
5) 법 제14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지정취소	-	-
6) 법 제14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취	-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소		
라.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3호의2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지정취소
마.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4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지정취소
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4호의2	지정취소	-	-
사.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 제5호	사업정지 60일	사업정지 120일	지정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⑥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4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4호				
1)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2) 별표 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2 제4항제5호	지정취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本 규제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이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의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예상되는 **매출 증대를 고려**할 때 **규제 준수 가능성은 매우 高**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에서**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신뢰성을 판단**하므로, **추가적인 집행자원 없이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특허청의 사업담당자**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집행이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ㅇ 시행령 제정안 작성('24.3.13, 특허청)
- ㅇ 廳 內 의견수렴 실시('24.3.14 ~ 3.20)
- ㅇ 시행령 제정안 확정('24.3.21)

2. 향후 평가계획

- ㅇ 시행령 제정 이후 **주기적으로 진단기관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 검토 및 환류** 시행

3. 종합결론

- ㅇ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특허기술 조사·분석IP-R&D 등 **품질 향상**, **민간 시장 확대** 및 **우수 특허 창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ㅇ 本 지정기준은 진단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 조사·분석IP R&D 등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처분**으로, 특허기술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무분별한 세액공제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4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